

-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2005년 3월 2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8일, 임한중의원의외 38인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9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04. 10. 14일),

제15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05. 3. 29)

-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임한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요건을 강화(등록기준 면적을 330m²에서 660 m²으로 확대)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,

- 조례개정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누락·간과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2002년 7월 1일 조례개정 시행 이전에 기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적용 (부칙 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
-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기 타 :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임 령)

가. 제안배경 및 경과

- 동 조례안은 임한중 의원외 38인으로부터 2003. 10. 8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0호로 2003. 10. 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7월 1일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이 330㎡ ⇒ 660㎡로 강화되어 시행하면서, 조례개정 이전에 종전기

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·개정하려는 내용임.

나. 세부사항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26일 제 13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영세상인의 난립으로 업소주변 이면도로상에 전시용 차량 및 이용객 차량의 불법주차와 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으로 시민불편과 상거래 질서문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임.
- 금번, 임한중 의원의 38인은 당시 개정조례안에 조례시행일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누락·간과하여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 것임
- 한편, 의원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제안된 조례(안)대로 2002. 7.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면 행정불소급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조례규정을 믿고 따라준 시민에게 신의를 상실하게 되며, 행정기관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,
아울러 조례를 개정한다면 특정인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, 이와 유사한 민원인 발생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선례가 되므로 현 시점에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.
- 그러나 조례 개정이전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통한 등록변경 안내, 조례 개정시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 부족 등을 지적함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4월 26일 의결 당시 영세상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,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2002

년 개정조례 시행일 전(2002. 7. 1 이전)에 종전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구제, 그리고 2002년 개정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현 조례규정(660㎡)대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하는 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12, 찬성 9, 반대 1, 기권 2)

7. 소수의견 요지

-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동 조례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분리 또는 연계하는지 법적 검토 및 연면적(330㎡ 또는 660㎡)에 대한 타당성 검토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